

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1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4일

3. 제안이유

○ '문화재'를 '국가유산' 체제로 개편하는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및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.

○ 이에, 국가유산 체제에 발맞춰 관련 조례인 「충청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」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법령에 따른 제명 변경

-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

→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

○ 인용법령 명칭 변경

- 「문화재보호법」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(안 제1조 및 제2조)
-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(안 제7조)

○ 정부기구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

- “문화재청장” → “국가유산청장”(안 제9조)

○ 법령에 따른 조문 변경

- “국외소재문화재” →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(안 제1조~제9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및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및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있는 ‘문화재’ 라는 용어를 ‘문화유산’ 으로 변경하고, 정부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‘문화재청장’ 을 ‘국가유산청장’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변경을 통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춰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